

『인간과 평화』 편집위원회 규정

제정 2020년 09월 01일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『인간과 평화』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편집위원회 구성)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연구소 정관에 따른 본 운영내규에 따라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 (편집위원장의 선임)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)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, 전공분야, 소속 기관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. 위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편집위원장은 임기 내에 편집위원의 사임과 해임을 연구소장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 (편집위원회 간사)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편집위원회 역할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
- ① 편집 방향과 편집 구성 등 잡지 간행에 따른 제반 사항
- ② 원고 심사 및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추천
- ③ 원고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최종 판정
- ④ 원고 심사 및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

제7조 (편집위원회 의결)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, 의결과정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8조 (편집위원 윤리) 편집위원은 원고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,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